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950호
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3. 제출일자 : 2024. 5. 27.

4. 회부일자 : 2024. 5. 30.

Ⅱ. 제안이유

○ 2023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과 이월금을 반영하고, 공정률 상승에 따라 건립 공사 촉진을 위한 2024년도 시설비 지출계획 증액과 이월금 집행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자함.

Ⅲ. 주요내용

- 1. (2023년도 말 조성액) 총 46,692,524천원 증가
 - 2023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과 이월금 반영

		증감		
기정(A)	실제 예차금 화수 금액 ①	이월금 ②	소계 (③=①+②)	(C=B-A)
93,468,460	133,463,502			46,692,524

2. (지출계획) 총 31,498,782천원 증가

○ 공정률 상승에 따라 건립 공사 촉진을 위한 2024년도 시설비(공사 비 및 관급자재) 지출계획 증액과 이월금 집행 반영

(단위: 천원)

기정(A)		변경 후 지출계획		
	시설비 증액 ①	이월금 ②	소계 (③=①+②)	(C=A+B)
41,799,993	24,801,300	6,697,482	31,498,782	73,298,775

3. 수입·지출계획 변경 내용

(단위: 천원, %)

	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							. [[], 70)
항목	년 변경(A)	기정(B)	¬ 증 감 (C=A-B)	항목	변경(A)	기정(B)	증 감 (C=A-B)	증감율 (D=C/B)
합계	135,417,310	95,422,268	39,995,042	합계	135,417,310	95,422,268	39,995,042	41.91%
	133,463,502	93,468,460	39,995,042	비융자성 사업비	66,601,293	41,799,993	24,801,300	59.33%
이자수입	1,953,808	1,953,808	-	예치금	68,816,017	53,622,275	15,193,742	28.33%

Ⅳ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심혁보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950호로 제출되어 2024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- 동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서울 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의 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검토의견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¹⁾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'지방기금법') 제8조²⁾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며,

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%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3).

¹⁾ 금년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가 개정되어 조례명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로, 기금명 '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'이 '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'으로 변경되었음.

²⁾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 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³⁾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<생 략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

○ 따라서 동 변경안 중 지출계획에서 '기관운영(비융자성사업비)'가 당초 지출계획금액 418억원에서 666억 1백만원으로 248억 1백만원(59.3%) 증가하였고 '재무활동(예치금)'은 당초 지출계획금액 536억 2천 2백만원에서 688억 1천 6백만원으로 151억 9천 4백만원(28.3%) 증가하였는바,

동 변경안은 지방기금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.

[표-1] 신청사 건립 기금 변경 내역

(단위: 천원)

	수 입	계 획			지 출	계 획	
수입항목	'24년 수입액 변경 (A)	′24년 수입액 기정 (B)	증 감 (C=A-B)	지출항목 (정책사업)	'24년 지출액 변경 (A)	'24년 지출액 기정 (B)	증 감 (C=A-B)
합 계	135,417,310	95,422,268	39,995,042	합 계	135,417,310	95,422,268	39,995,042
예치금 회수	133,463,502	93,468,460	39,995,042	비융자성 사업비 (기관운영)	66,601,293	41,799,993	24,801,300
이자수입	1,953,808	1,953,808	0	예치금 (재무활동)	68,816,017	53,622,275	15,193,742

- 이와 같이 2개의 정책사업에서 지출계획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액 반영으로 인한 것이며, 이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은 당초 수입계획금액 934억 6천 8 백만원에서 1,334억 6천 3백만원으로 399억 9천 5백만원(42.8%) 증가하였음.
- 이처럼 큰 폭의 예치금 회수액 증가는 2023년 '기관운영(비융자 성사업비)'의 낮은 집행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, 서울시교육청은

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^{1. 「}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^{2. 「}재해구호법」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<생 략>

'오염토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'으로 '기관운영(비융자성사업비)'의 당초 지출계획현액 554억 7천 4백만원의 12.3%인 68억 2천 7백만원만을 지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.

[표-2] 2023년 '기관운영' 지출 내역

(단위: 천원)

항목	지출계획 금액 (A)	전년도 이월액(B)	지출계획 현액 (C=A+B)	지출액(D)	다음연도 이월액(E)	집행잔액 (F=C-D-E)
설계비	13,784	0	13,784	0	0	13,784
시설비	36,126,704	17,717,532	53,844,236	6,799,305	5,817,258	41,227,673
감리비	1,471,000	0	1,471,000	0	880,224	590,776
부대비	144,826	0	144,826	27,348	0	117,478
합계	37,756,314	17,717,532	55,473,846	6,826,653	6,697,482	41,949,711

○ 그러나 오염토는 2022년 12월에 발생하였고 2023년 4월에 오염 토 반출 정화공사가 실시되었는바(공사기간 1년 예정),

서울시교육청은 사업의 순차적 지연에 따른 사업비의 대규모 불용 발생을 2023년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.

-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에 동 기금 운용계획안을 크게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조정했어야 하나 이를 방치하였고 그 결과 금 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임.
- 이는 동 기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운용 및 관리가 방만하게 이루 어져 온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,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동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시 적정한 지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의 집행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.

금번 변경안에서 공정률 상승에 따른 공사 촉진을 위해 '기관운영 (비융자성사업비)'의 시설비를 증액하고자 하는바, 신청사 건립 추

진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임.

○ 아울러 동 기금의 이월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,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 사유인 이월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 청은 기금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.

□ 이상으로 「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